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3260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승

담당변호사 김미진

변 론 종 결 2023. 1. 26.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9. 7. 9. 접수 제9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74791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9,008,245원과 그 중 7,746,701원 대하여 2002.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40392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7,941,369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36%의 비율에 의한 돈'의 채권이 있다.

나. C은 어머니 D로부터 경남 남해군 E 답 7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경남 남해군 F 대 233㎡와 G 대 12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H리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9. 7. 9. H리 각 토지를 사촌인 I에게 매매대금 61,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7. 9.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6. 1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C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는 2022.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무렵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H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과 같은 날 H리 각 토지를 I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H리 각 토지가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하는 적극재산에 포함될지가 문제이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I은 모두 C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H리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고 이례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마쳐줌으로써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무자력이 된 사실을 종합하면, C의 이 사건 증여계약과 H리 각 토지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은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C이 H리 각 토지를 I에게 매매대금 61,00,000원에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금전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보관장소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채권자들이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C이 I로부터 매매대금

61,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자신의 상속분을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받았을 뿐 사해행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C과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